

가스계량기 대피공간 설치 관련 질의회신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(09.09.26)에 따라 가스계량기를 대피공간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어 기 시공되고 있는 대피공간 설치에 따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질의내용

관보 제17097호중 별표7 가스계량기 설치 기준에 보면 설치금지장소로 “공동주택의 대피 공간, 방, 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”로 되어 있는데 가스 안전공사에서는 무조건 개정된 법에 맞춰서 검사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니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.

당장 유예가 안된다면 적용시점을 “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계량기”에서 “건축사업 허가일”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답변내용

고객님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'09.9.26 개정 시행된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5제1호 가목1)가)에 따라 가스계량기는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

가스계량기는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공 중인 가스계량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아울러,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내관은 공사계획 신고 및 기술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, 동 설비는 사용자 공급관에 연결된 설비로써 사용자공급관과 동일한 공정으로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의 부칙('09.9.25) 제3조에 준하여 공사계획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, 이 개정규정 시행일('09.9.26) 이전에 설치 중인 가스계량기도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• 답변일자 : 2009. 10. 15

• 답변자 :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도시가스기준팀

김종모(jmkim@kgs.or.kr ☎ 031-310-1323)

*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분들은

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→ 우측 사이버지사 질의응답

→ 글번호 2566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